

2016년

연세-서대문 열린시민대학 위탁교육 협약서



연세대학교 미래교육원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

2016년

연세-서대문 열린시민대학 위탁교육 협약서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는 “2016년 연세-서대문 열린시민대학”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연세대학교 미래교육원(이하 “원”이라 한다)과 “2016년 연세-서대문 열린시민대학”(이하 “시민대학”이라 한다)을 공동 개설하고 다음과 같이 위탁교육 협약을 체결한다.

제 1 조 (목적)

본 협약은 “구”가 시민대학 교육을 “원”에게 위탁하고 위탁교육비를 지급하며 “원”은 “구”가 위탁한 교육과정 운영을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제 2 조 (운영 개요)

1. 과 정 명 : 2016년 연세서대문 열린시민대학 <인공지능과 인간, 우리는 어디로 가야하는가>
2. 교육기간 : 2016. 5. 17. ~ 6. 23. (총12회)
3. 교육시간 : 매주 화, 목 / 15:00 ~17:00 (2시간 강의)
4. 교육인원 : 70명
5. 교육대상 : 서대문구민

제 3 조(기간)

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시민대학 교육 종료일까지로 한다.

제 4 조 (권리 및 의무)

1. “구”는 “원”이 본 시민대학 교육과정 운영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지원을 한다.
2. “원”은 “구”로부터 위탁받은 시민대학이 교육의 목적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성실과 신의를 다하여 의무를 수행한다.
3. “원”은 시민대학 교육과정 개발과 운영에 책임과 권한을 가지며 “구”는 필요시 “원”과 협의할 수 있다.

가. “구”의 의무

- ① 수강생 모집 및 선발
- ② 홍보 및 홍보물 제작
- ③ 기타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행정 지원

나. “원”의 의무

- ① 교육과정 계획 수립
- ② 특강강사 선정
- ③ 입학·수료에 따른 제반 사항
- ④ 교육과정의 운영 및 평가
- ⑤ 수료증 발급
- ⑥ 위탁교육비 집행

제 5 조(위탁교육비 지급)

“구”가 “원”에게 지급할 위탁교육비는 금이천만원(₩20,000,000)으로 하며, 2회에 나누어 지급하되 1차분 일천만원(₩10,000,000) 협약 체결 후 지급하고, 2차분 일천만원(₩10,000,000)은 4주차 강의가 끝나는 시점에 지급한다.

제 6 조(위탁교육비 집행 및 정산)

“원”은 “구”가 지급한 위탁교육비를 집행함에 있어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, “원”은 교육 종료 후 집행된 교육비 세부내역을 “구”에게 제출한다.

제 7 조(협약의 변경 및 해지)

1. 협약 수행의 차질 등 부득이 한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“구”와 “원”의 합의에 의하여 협약사항을 수정·변경할 수 있다.
2. “구”와 “원”은 상대방이 협약 수행의 의지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,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에게 협약해지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기간 중 시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이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제 8 조(수료조건 및 특전)

1. 시민대학 교육과정을 3분의 2이상 출석한 수강생에게는 연세대학교 총장과 미래교육원장 공동명의로 수료증을 수여한다.
2. 수강생에게는 수강기간 중 연세대학교 학술정보원(중앙도서관) 및 자료실 이용이 가능하도록 한다.

제 9 조(일반 원칙)

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“구”와 “원”은 일반적인 통상 관례에 따라 협의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.

본 협약의 성립을 증명하고 상호간의 성실한 이행을 확약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“구”와 “원”이 각 각 1부씩 보관하며, 상호 간 서명날인 한 시점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.

2016년 4월

“원”

연세대학교 미래교육원장

이 두 원 (인)

“구”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

문 석 진 (인)

2016년

연세-서대문 열린시민대학 위탁교육 협약서



연세대학교 미래교육원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

2016년

연세-서대문 열린시민대학 위탁교육 협약서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는 “2016년 연세-서대문 열린시민대학”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연세대학교 미래교육원(이하 “원”이라 한다)과 “2016년 연세-서대문 열린시민대학”(이하 “시민대학”이라 한다)을 공동 개설하고 다음과 같이 위탁교육 협약을 체결한다.

제 1 조 (목적)

본 협약은 “구”가 시민대학 교육을 “원”에게 위탁하고 위탁교육비를 지급하며 “원”은 “구”가 위탁한 교육과정 운영을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제 2 조 (운영 개요)

1. 과 정 명 : 2016년 연세서대문 열린시민대학 <인공지능과 인간, 우리는 어디로 가야하는가>
2. 교육기간 : 2016. 5. 17. ~ 6. 23. (총12회)
3. 교육시간 : 매주 화, 목 / 15:00 ~17:00 (2시간 강의)
4. 교육인원 : 70명
5. 교육대상 : 서대문구민

제 3 조(기간)

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시민대학 교육 종료일까지로 한다.

제 4 조 (권리 및 의무)

1. “구”는 “원”이 본 시민대학 교육과정 운영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지원을 한다.
2. “원”은 “구”로부터 위탁받은 시민대학이 교육의 목적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성실과 신의를 다하여 의무를 수행한다.
3. “원”은 시민대학 교육과정 개발과 운영에 책임과 권한을 가지며 “구”는 필요시 “원”과 협의할 수 있다.

가. “구”의 의무

- ① 수강생 모집 및 선발
- ② 홍보 및 홍보물 제작
- ③ 기타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행정 지원

나. “원”의 의무

- ① 교육과정 계획 수립
- ② 특강강사 선정
- ③ 입학·수료에 따른 제반 사항
- ④ 교육과정의 운영 및 평가
- ⑤ 수료증 발급
- ⑥ 위탁교육비 집행

제 5 조(위탁교육비 지급)

“구”가 “원”에게 지급할 위탁교육비는 금이천만원(₩20,000,000)으로 하며, 2회에 나누어 지급하되 1차분 일천만원(₩10,000,000) 협약 체결 후 지급하고, 2차분 일천만원(₩10,000,000)은 4주차 강의가 끝나는 시점에 지급한다.

제 6 조(위탁교육비 집행 및 정산)

“원”은 “구”가 지급한 위탁교육비를 집행함에 있어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, “원”은 교육 종료 후 집행된 교육비 세부내역을 “구”에게 제출한다.

제 7 조(협약의 변경 및 해지)

- 1. 협약 수행의 차질 등 부득이 한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“구”와 “원”의 합의에 의하여 협약사항을 수정·변경할 수 있다.
- 2. “구”와 “원”은 상대방이 협약 수행의 의지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,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에게 협약해지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기간 중 시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이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제 8 조(수료조건 및 특전)

1. 시민대학 교육과정을 3분의 2이상 출석한 수강생에게는 연세대학교 총장과 미래교육원장 공동명의로 수료증을 수여한다.
2. 수강생에게는 수강기간 중 연세대학교 학술정보원(중앙도서관) 및 자료실 이용이 가능하도록 한다.

제 9 조(일반 원칙)

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“구”와 “원”은 일반적인 통상 관례에 따라 협의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.

본 협약의 성립을 증명하고 상호간의 성실한 이행을 확약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“구”와 “원”이 각 각 1부씩 보관하며, 상호 간 서명날인 한 시점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.

2016년 4월

“구”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
문 석 진 (인)

“원”

연세대학교 미래교육원장
이 두 원 (인)